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 민 체 육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시책과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20.12.8. 공포, '21. 6.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체육지도자 배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 중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으로 구체화(안 제7조)

나.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유죄판결확정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11조의4, 제11조의5, 11조의6)

1) 위원의 임기(2년) 및 해촉사유, 의결정족수 등 규정(안 제11조의4)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규정(안 제11조의5)

3) 당사자의 의견제출권 부여, 관계자·전문가 의견 청취(안 제11조의6)

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유죄판결확정자 명단 공개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공개 내용과 방법(안 제11조의7 신설)

- 1) 공개 내용은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나이, 주소), 행위의 내용, 유죄 확정 판결로 함
- 2) 공개하기 전 공개 결정 사실과 공개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소명기간을 주어야 함
- 3) 명단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함
라. “통합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지부·지회”가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조의4, 제41조 등)
마.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인 인권 침해 등의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체육단체와 그 지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체육단체로 명확화(안 제18조의4)
* 제2조제9호가목 :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바. “징계정보시스템에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와 “학교 및 체육단체에서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별표 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의견조회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사전검토 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공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한다.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단체·법인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위원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 또는 명단 공개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의6(당사자의 의견제출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서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당사자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7(명단공개의 내용·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려는 경우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개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의 내용
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④ 법 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

광부의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이를 공개하
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각각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체육단체

제41조의 제목 “(통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을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체육회”를 “대
한체육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8조의1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자료의 요청

제44조의3제2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8.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9. 법 제18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10. 법 제18조의1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제45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45조제1항 관련)”을 “(제45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5 표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u>공공단체</u> 로 한다.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 ----- ----- ----- ----- ----- ----- ----- <u>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u> ----- <u>업</u> -----.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u>공공</u> <u>단체</u> 로 한다.	② ----- ----- ----- ----- ----- ----- ----- ----- ----- ----- <u>지방</u> <u>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u>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
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생략)

⑤·⑥ (생략)

<신설>

에 따른 공기업으---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 지
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공기업 -----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
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
다)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3

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 12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

<신 설>

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단체·법인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위원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 또는 명단 공개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신 설>

<신 설>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의6(당사자의 의견제출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서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당사자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7(명단공개의 내용 · 방

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려는 경우 명단 공개 대
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개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운영위원회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
다.

③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의 내용
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
결 내용

④ 법 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
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에 6개
월간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4(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는 국가대표선수나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기 위하여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정한 사람 중에서 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사람
가. ~ 라. (생략)

2. 제1호 각 목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는 국가대표선수나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기 위하여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정한 사람 중에서 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4(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 ① -----

--.

1. -----

---- 대한체육회-----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 대한체육회-----

를 위한 지도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이전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입은 장애로 장애 정도가 변경되어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생략)

제18조의4(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3. (생략)

② (생략)

제41조(통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① -----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
호가목의 체육단체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① -----

34조제2항에 따라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44조(권한의 위탁 등) ①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
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
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통합체
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
탁한다.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
윤리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3. (생략)

<신설>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
리)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
한이나 업무가 위임·위탁된 경

----- 대한체육회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권한의 위탁 등) ①-----

----- 대한체
육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8조의17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
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의
요청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
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③ (생략)

④ 통합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

-----.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9. 법 제18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0. 법 제18조의1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한체육회-----

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생 략)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u>	-----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3116